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3
----------	-----

발의년월일: 1998년 6월 일

발 의 자: 장 석 천의원외 3인

☐ 제 안 이 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공포('98. 4. 30)되어 파주시의회 의원정수가 14인에서 13인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총무보사위원회)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 위원수를 나타내는 수량명사"명"을 상위법령(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지방자치법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으로 정정하여 법률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하며,
- 현행 일부조문중 기관명칭이 조례상 명명되어 있는 기관명칭과 불합하여 조례상 명명된 기관명칭과 일치되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총무보사위원회의 정수를 7명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수를 나타내는 수량명사의 "명"을 "인"으로 한다.(안제2조)
- 조문상의 기관명칭중 "위생처리장"을 "위생처리장관리소"로,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로 한다.(안제3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5인
2. 총무보사위원회 6인
3. 산업건설위원회 6인

제3조 제2항 2호중 "위생처리장"을 "위생처리장관리소"로하고, 3호중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5명 2. 총무보사위원회 7명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그소관)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총무보사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사회산업국(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u>위생처리장</u>, 시민회관 기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사회산업국(산업과, 축산과, 기업지원과),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u>상수도사업소</u>, <u>공영주차장</u>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생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5인 2. 총무보사위원회 6인 3. 산업건설위원회 6인 제3조(상임위원회의 그소관)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u>위생처리장관리소</u> 3.<u>상수도관리사업소</u>, <u>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u>..... ③ (현행과 같음)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인)

1998년 4월 30일

국무총리 서

김종필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김정길

◎法律 第5,537號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項중 “90日 이상”을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舉 日 전 60日 후에 귀국한 者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舉日까지)”로, “90日의 期間”을 “60日의 期間”으로 한다.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地域市·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舉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選舉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行政區域을 말한다)다만 2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다만 2 人으로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해

이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郡級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 合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舉에 한하여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는 統合전의 市와 郡마다 2人으로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14人미만이 되는 廣域市 및 道는 그 定數를 14人으로 한다.

第23條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自治區·市·郡의 地方議會(이하 “自治區·市·郡議會”라 한다) 議員 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邑·面·洞[地方自治法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第5項의 行政洞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人으로 한다. 다만, 人口 5千미만의 洞(島嶼地域인 洞을 제외한다)은 그 區域과 인접한 邑·面·洞과 統合한다.

(2) 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7人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定數를 7人으로 한다.

第26條第2項중 “邑·面·洞”을 “邑·面·洞(人口 5千미만의 洞이 인접한 邑·面·洞과 統合된 때에는 그 統合된 區域을 말한다)”로 “名稱”을 “名稱·區域과”로 한다.

第30條第6項 및 第7項을 削除하고, 同條第8項 및 第9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누구든지 選舉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選舉人名簿作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1996. 3. 1 조례 제2호]

개정 1997. 5.15 조례 제16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5명
2. 총무·보사위원회 7명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제 3 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등을 처리한다.

②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보사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사회산업국(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처리장, 시민회관, 기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사회산업국(산업과, 축산과, 기업지원과),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공영주차장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 4 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후1)